

〈公開세미나 發表要旨〉

沿近海漁業의 勞使協助問題

—大型機船底引網 漁業을 中心으로—

孔 光 泳\*)

- 1. 序 論
- 2.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의 現況
- 3. 問題點
- 4. 對 策

1. 序 論

우리나라의 水産業은 70年代 中반에 들어서 生産面으로나 輸出面으로 볼 때 世界 水産大國의 位置에 浮上하게 되었으며 國民食糧供給源으로서의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 것은 世ష 再言을 要치 않는 事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水産業의 經營個体別經營規模나 經營形態, 生産組織, 生産手段, 漁業勞動 및 이에 수반되는 經營管理, 勞務管理面은 너무나도 一般 陸上 企業에 比하여 落後내지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이것은 水産業이 他産業과 比較할 때 그 바탕 自体가 自然環境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는 特性이 큰 故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우리 水産人들의 責任도 全無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오늘 주어진 課題는 大型機船底引網 漁業의 勞使協助問題에 對한 것이므로 當該 業種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고 勞使間의 協助事項을 硯이 보았다.

2.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의 現況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의 現況은 다음 表에서 보는 事와 같다.

漁船勢力面에서

年度別 漁業別	沿 近 海		大 型 機 底	
	隻 數	톤 數	隻 數	톤 數
1 9 7 5	18,486	213,742	423	37,088
1 9 7 6	21,508	231,301	462	42,017
1 9 7 7	28,603	263,537	466	42,545

\* 但, 沿近海漁船中 動力船에 局限하였음.

\*) 大型機船底引網水協 專務

生産面에서

(單位: %)

年度別 漁業別	沿 近 海		遠 洋
	大型機底	其 他	
1975	176,192	1,033,169	565,593
1976	169,810	1,087,170	724,260
1977	185,803	1,122,520	595,927

以上과 같이 漁船勢力이나 生産面에서 볼 때 우리나라 水産業 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比重이 莫重할 뿐 아니라 이에 從事하고 있는 漁船員의 數도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大型機底漁業從業者數

年度別	數 人 員
1975	5,499
1976	6,006
1977	6,174

따라서 오늘의 主題가 漁船員과 漁業者間의 關係, 다시 말해서 勞使間에 대한 問題點을 提示함으로써 이에 대한 改善 내지 協助가 무엇보다 先決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3. 問題點

前述한 바와 같이 水産業은 他産業과 달리 그 生産 즉 漁撈工程이나 環境의 特殊性에 따라 漁業勞動도 一般 企業의 勞動보다 特殊한 性格을 띠고 있다. 換言하면 漁業勞動은 漁業 生産의 一次的인 要素로서 그 比重이 生産手段의 設備보다도 優位에 있다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水産業은 漁業者인 經營主体가 漁業經營의 成敗를 漁業勞動者인 一部 幹部船員에게 거의 一任하고 있는 事實이 이를 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漁業勞動의 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漁業勞動은 手勞動體系를 主体로 한 勞動이며,

둘째, 勞動環境과의 關係에서는 自然에 對하여 被支配的 特質을 가진 勞動이고,

셋째, 漁業勞動은 그 對象物인 水産生物에 規制되어 不均等 不規則 및 斷續的인 特質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特性을 가진 漁業勞動을 提供하는 漁業勞動者에게 支給되는 賃金은 어떤 形態를 갖고 있는지에 對하여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깃가림 賃金形態가 水産業 賃金形態의 代名詞처럼 되어 있다. 이 깃가림 賃金形態도 漁業의 種類, 規模, 慣習, 勞使間의 協議關係, 漁況 等에 따라 그 形態를 달리하고 있다.

本 業界에서는 最低 生計費 保障을 原則으로 하는 固定給 併用 깃가림制를 채택하여 漁業勞動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있다. 그러나 漁業勞動者와 漁業者間에 共同經營은 아닐지언정 賃金制度가 깃가림制를 免치 못하고 있는 以上, 本業의 問題點이 漁業經營者인 漁業者

#### 沿近海漁業의 勞使協助問題

와 이에 從事하고 있는 漁業勞動者의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當業界의 問題點으로서는 여러 側面에 많으나 그중 重要한 것을 들면

- (1) 漁業資源의 破壞 내지 漁業秩序紊亂
- (2) 資源 및 漁場의 限定性
- (3) 隣接國과의 漁撈 紛爭 및 安全操業確保問題
- (4) 漁船裝備 및 漁船의 老朽化와 零細性
- (5) 船員資質의 低下와 熟練된 漁船員 確保 등을 列舉할 수 있겠다.

以上과 같은 問題點은 그 結果的인 產物으로써 漁業經營의 側面에서 보면 대부분의 經營個體가 單純 내지 縮小再生産을 免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水産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他企業에 比하여 生産設備, 備品, 漁具, 主副食 및 一般 消耗品에 이르기까지 방만한 管理로 經營의 不實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安全事故마저 非一非再하여 貴重한 生命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勞務管理面에서도 엄격한 分業내지 責任部署의 管理가 組織的으로 되지 못함을 기화로 發生되는 事故는 生産을 中斷하는 事例마저 빚고 있으며 근간에 와서는 人力難을 틈타 下部船員의 流動狀況이 심하여 生産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本業의 經營이 絶望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다란 要因으로 볼 수 있다.

#### 4. 對 策

最近 本業 賃金制度에 對한 改善點을 찾기 위한 船主側 自体設問調査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重要한 事項을 抽出하였다.

- (1) 現行 깃가림제에 對하여는 아직까지 가장 合理的 이라고 보나 賃金額 豫測不可가 不安要因이다.
- (2) 固定 給料制 施行에 따라 漁船員의 漁撈活動은 오히려 低下할 것이다.
- (3) 船長과 下部船員과의 높은 賃金格差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나 現實的으로 至難하다.
- (4) 本業의 展望에 對하여는 대부분이 現狀維持가 고작이다.

以上の 몇 가지 事項에서 우리는 從來의 安逸한 漁業經營意識이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看破할 수 있다. 따라서 從來의 漁業經營은 投機性이라는 觀念에서 組織的인 經營態勢로 改善 내지 轉換함이 時急하며, 여기에는 오직 勞使間이 不斷한 努力으로 圓만한 對話를 통한 解決點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勞使雙方間이 이러한 不安要因을 除去하기 위한 關係改善이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 즉 經營者와 從事者의 關係에 있어 船主와 船長間의 二者의 組織의 幅을 船主와 全体船員間의 間隔으로 擴大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勞使雙方의 執行機關이 仲裁役割을 해야 할 것이다.

## 수 산 경 영 문 집

예를 들면 從來 勞使協議라 하면 勞組側은 現實에 付合되지 않는 무리한 勤勞條件改善만을 내세우고 使用者側은 이를 一蹴함으로써 本業經營構造 自體의 矛盾點 改善에는 事實上 度外視한 것이 全部라 할 수 있다.

그러한 最近에 와서 이러한 狀態가 적어도 本業界에서는 急速히 改善되고 있음은 무척 鼓舞的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重要한 것은 船員의 資質向上과 熟練漁船員의 確保策이 制度的으로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方案이 있겠으나 産學協同으로 船員 短期 技術學校를 新設하여 近海 惡船에 一定期間 義務的으로 乘船케 하고 이들에 對하여는 兵役特惠를 附與하는 등 政府의 支援策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들 船員을 管掌하고 있는 海員勞組는 組合員을 보다 組織的으로 管理함으로써 船員의 素養을 向上시켜 組合員인 漁船員의 生命保護는 勿論 船內의 物資를 節約하여 經營의 合理化를 通한 스스로의 所得增大를 도모할 줄 아는 漁業從事者의 次元을 탈피한 漁業經營人의 立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下部船員의 流動이 最大限 抑制되어야 할 것이다. 漁業生産의 特質上 不可하다고 斷念할 수 있으나, 이러한 現象은 漁業生産性의 低下, 船內 人和의 不協和音 등 여러가지 不條理를 派生시키는 結果를 초래하므로 海員勞組에서는 組合員의 就業斡旋을 恒시 經營主側과 連結할 수 있는 自體 組織管理에 萬全을 기하여 줄 것이 切實히 要望된다.

勞使協助 없이는 水産業의 發展이란 있을 수 없다는 大命題아래 그야말로 진지한 勞使協助가 우리에게 정말 必要한 時期가 到來한 것으로 本人은 確信하면서 勞組側의 繼續的인 協助를 간곡히 付託드리는 바이다.